

대구지방법원 2021. 4. 1 선고 2020가단13314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창화

피고B

변론 종결2021. 3. 4.

판결 선고2021. 4. 1.

주 문

1.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/7 지분에 관하여,
가.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0. 6. 8.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소외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보전채권의 발생

- 1) 소외 주식회사 D은 2016. 1. 5.경 소외 C에게 8,000,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.
- 2) 원고는 2018. 6. 21.에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았고, 채권양도통지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.
- 3)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74248호로 위 채권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그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8. 10. 13. 확정되었는데, 확정된 채무액은 9,673,230원과 그 중 원금 6,751,239원에 대한 2018. 8. 21.부터 완제시까지 연 34.9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.

나. 채무자 C의 사해행위

- 1) 채무자 C의 아버지 망 E이 2020. 3. 31. 사망하였고, E의 배우자인 피고, 자녀들인 C, F가 재산의 공동상속인이었으며, 채무자 C의 법정 상속지분은 2/7였다.
- 2)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이 2020. 6. 8.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유일한 상속재산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, '이 사건 아파트'라고 한다)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하였고, 이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0. 6. 9. 접수 제91363호로 망 E으로부터 피고 앞으로의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다. 채무자 C의 무자력

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 채무자 C에게 다른 적극재산은 없었으며,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외에도 G은행에 400만 원 상당, H에 80만 원 상당, I에 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.

【인정근거】 다통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센터,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, 이 법원의 J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.

2.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채무자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인 2/7 지분을 포기하고 그 부동산 전부를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인 피고로부터 채무자인 C 앞으로의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

청구할 수 있다.

3.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망 E이 생전에 채무자 C을 포함한 자녀들에게는 그 몫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피고가 받아야 할 몫을 받은 것일 뿐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고,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 채무자 C에게 채무가 있는 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다툰다.

그러나 망 E이 생전에 채무자 C에게 나누어 준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(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E이 2015. 8. 3.에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300,000,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K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음이 인정되고, 피고 주장에 의하면 그 대출금이 자녀들에게 증여되었다는 취지이나, 채무자 C이 그 대출금 전부나 일부를 받아갔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).

그리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선의였다는 사실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,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항변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결론

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/7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0. 6. 8.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 피고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.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성수

별지